

法の課税時價標準額을 適用하던 것을 國有財産法の 基準인 公示地價를 適用토록 하면서 占用料 過多增加에 대한 調整根據 마련, 占用料返還 根據 調整, 徵收交付金 上向調整, 占用料算定基準方法 變更 및 占用料 引上 등 河川占用料 徵收基準을 改正하려는 것이며,

둘째, 서울特別市公有水面占用料等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公有水面占用料等徵收에 대한 公有水面管理法施行規則이 改正됨에 따라서 占用面積 및 占用期間에 對한 算定方法 改善, 占用料 過多增加에 대한 調整根據 마련, 徵收交付金 上向調整, 占用料算定基準 變更 및 一定額數와 占用料 引上 등을 條例案에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特別市下水道處理場費特別會計設置條例改正條例案은 下水道事業 中 下水管渠事業費는 一般會計에서 負擔하고 있고, 下水處理場建設費와 運營費는 特別會計로 設置되어 있어서 二元化되어 있는 것을 財政制度 改善次元에서 特別會計로 統合運營함으로써 會計의 簡素化와 財政運營의 효율성을 提高하고, 統合運營으로 인하여 下水道事業의 總 所要費用을 충당하기 위한 下水道使用料 現實化가 容易하고, 財政自立度를 促進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下水處理場費特別會計를 下水道事業特別會計로 名稱을 變更하고, 一般會計에서 負擔하고 있던 下水管渠費를 下水道事業特別會計에 編成하여 特別會計歲入은 下水道使用料負擔金, 기타 雜收入과 借入金으로 하고, 使用料의 原價未達로 인한 不足金額은 一般會計에서 支援받도록 規定하여 改正하는 것이며,

넷째, 서울特別市上水道公債條例廢止條例案은 上水道建設事業費 財源調達을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15條에 의거, 78年 12月부터 上水道公債條例를 制定하여 우리 市民이 給水工事を 申請할 경우 一定額의 公債를 買入토록 하기 위하여 制定한 條例였으나 發行目標인 450億 원이 95年 9月末 達成되었으며, 公債賣出し 현실적으로 上水道事業 財政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우리 市民의 經濟的 負擔을 輕減하기 위하여 廢止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심도 있는 討論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받고 우리 委員會의 滿場一致로 通過되었습니다. 이들 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內容은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原案 可決되도록 贊成하여 주실 것을 付託을 드립니다.

이상 審査報告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河川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公有水面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下水處理場費特別會計設置條例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上水道公債條例廢止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4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 照)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며, 제5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

| | |
|--|--|
| <p>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p> <p>②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경</p> | <p>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p> <p>〈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p> |
|--|--|

〈별표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제2조관련)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7.토석·사력의 채취의 산정기준란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p> |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 | | | | | | | | |
|--------------|---|------------|-----|------|-----|-------------|------------|-----|------------|------------|-----|------------|------------|
| | 마. 관로등 매설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 | | | | | | | | | | |
| 3. 하천부속물의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 | | | | | | | | | | |
| 4. 유수의 점용 | 가. 전기사업 연액 m^3/sec 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1) $0.05m^3-0.5m^3/sec$ 까지 연액 10,000원 (2)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가) 갑지 : 월액 20,000원 (나) 을지 : 월액 10,000원 (다) 병지 : 월액 6,000원 *5톤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이하 유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지역등급</th> <th>동력선</th> <th>무동력선</th> </tr> </thead> <tbody> <tr> <td>갑 지</td> <td>월액 100,000원</td> <td>월액 50,000원</td> </tr> <tr> <td>을 지</td> <td>월액 60,000원</td> <td>월액 30,000원</td> </tr> <tr> <td>병 지</td> <td>월액 20,000원</td> <td>월액 10,000원</td> </tr> </tbody> </table> *5톤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 지역등급 | 동력선 | 무동력선 | 갑 지 | 월액 100,000원 | 월액 50,000원 | 을 지 | 월액 60,000원 | 월액 30,000원 | 병 지 | 월액 20,000원 | 월액 10,000원 |
| 지역등급 | 동력선 | 무동력선 | | | | | | | | | | | |
| 갑 지 | 월액 100,000원 | 월액 50,000원 | | | | | | | | | | | |
| 을 지 | 월액 60,000원 | 월액 30,000원 | | | | | | | | | | | |
| 병 지 | 월액 20,000원 | 월액 10,000원 | | | | | | | | | | | |

| 구 분 | 산 정 기 준 |
|--|--|
| | (3) 부선(유선장을 제외)및 골재수송선 (가) 50톤이하 월액 40,000원 (나) 50톤초과 100톤까지 월액 50,000원 (다) 100톤초과 200톤까지 월액 70,000원 (라) 200톤초과 300톤까지 월액 90,000원 (마) 300톤초과 400톤까지 월액 110,000원 (바) 400톤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도선·정기여객선 및 유선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
| 5. 지하의 유수채취 | 4. 유수의 점용의 산정기준란의 요금에 준한다. |
| 6. 배수(주수) | 가. 공업용수의 배수 4. 유수의 점용의 산정기준란중 공업용수 인수의 1/3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담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 4. 유수의 점용의 산정기준란중 공업용수 인수의 1/4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 7. 토석·사력의 채취 | 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위의 조사는 2개 지역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사용료를 시장이 고시하여야 하며,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결정금액이하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
| 8. 죽목·갈대·목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7.토석·사력의 채취의 산정기준란,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토지의 점용의 산정기준란의 요금에 준한다. |
| 9. 스케이트장, 유선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 토지가격의 5/100 |

| <p>*비 고</p> <p>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p> | <p>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p> <p>3.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 | | | | | | | | | | | | |
|---|--|---------------|--------------------|--|--------------------|--|---------------------|---|----------------------|--|----------------------|--|----------|----------------------|--|
| <p>(별표2)</p> <p style="text-align: center;">점용료등 조정산식(제3조의2관련)</p>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전년대비 증가율</th> <th style="text-align: center;">납 부 할 점 용 료 등</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퍼센트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td> </tr> </tbody> </table> | 전년대비 증가율 | 납 부 할 점 용 료 등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 500퍼센트이상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 | |
| 전년대비 증가율 | 납 부 할 점 용 료 등 | | | | | | | | | | | | | | |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0/100+(증가율-10/100)×3/10}] | | | | | | | | | | | | | | |
|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3/100+(증가율-20/100)×1/10}] | | | | | | | | | | | | | | |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6/100+(증가율-50/100)×6/100}] | | | | | | | | | | | | | | |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19/100+(증가율-100/100)×3/100}] | | | | | | | | | | | | | | |
|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22/100+(증가율-200/100)×1/100}] | | | | | | | | | | | | | | |
| 500퍼센트이상 | 전년도점용료등+전년도점용료등×0.25 | | | | | | | | | | | | | | |
| <p>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중 “별표”를 “별표1에서 정한”으로 한다.</p> <p>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점용료등의 산정방법) ①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 점용 또는 사용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정하</p> | <p>는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100%</p> <p>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p> <p>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 | | | | | | | | | | | |